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 신설)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나. 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전동의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의 제목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 제1호 중 “신청하거나 해제”를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즉시	
해제 신청인	구분	[] 제한신청자 본인		[] 세대원, 직계존비속	
		[] 제한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해제 대상자	1	성명	제 한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제 한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3	성명	제 한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4	성명	제 한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의 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제한 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 직계존비속 및 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 포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 해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 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은 해제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그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 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칸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해제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일	제한 해제 신청 사유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동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한신청자의 사망 후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u>가정폭력피해자의 주 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u>)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제6조의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다.</u> 제13조의2(<u>가정폭력피해자의 주 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및 해제</u>)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 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 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 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 5서식에 따른다.